

북한 범죄관련 법제구축의 변천과정 분석 및 전망*

황의정**

- I. 서론
II.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의 형성 및 변화 과정
III.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 출현과 과잉 범죄규정화
IV. 결론: 김정은 시대 범죄규정화의 전망

국 문 초 록

이 글은 북한문헌을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관련 법제구축의 추진 방식과 과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범죄관련 법제구축을 전개하였다. 하나는 법사상과 법이론적 차원에서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 등 북한식 사회주의 법사상과 법적 정당성 논리로 법제구축을 추진하였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 방식의 차원에서 새로운 법관련 출판보도물을 통해 법제구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규범적 통제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김정은 시대 향후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정권은, 첫째, 이전 정권의 법적 통제정책을 계승하고 ‘사회주의법치’를 내세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여 법적 처벌을 행사해나갈 것이다. 둘째, 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할 법한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금융거래 및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부의 축적을 통한 실력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 법제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행위통제를 위해 사상교양보다는 범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통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주제어:** 북한 범죄, 법적 통제, 법제구축, 사회주의법무생활, 사회주의법치

* 이 논문은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범죄규정화 (crime-definition)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 박사학위논문, 2016)논문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coldreason@hanmail.net) 논문 및 저서 “북한의 주민 일상에 대한 법적 통제: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범죄 규정화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1권 제1호, 2017(여름호) 외.

I. 서론

북한은 비사회주의적 행위(non-socialist behavior)를¹⁾ 비롯한 사회적 일탈을 통제하는 데 그간 활용해왔던 사상통제와 물리적 강압방식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강제력이 강한 범죄규범을 만들어 법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경제난 이후 생겨난 북한주민들의 사회주의원칙과 배치되는 일탈행위를 법적 처벌근거에 따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처벌근거를 새로이 마련하는 관련 법 제·개정을 2004년 대중용 법전 편찬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형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일반범죄규정을 기존 106개에서 231개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범죄행위유형이 과잉 형성되었다. 물론 여기에는 기존 범죄규정에서 분리 규정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범죄규정이 다수를 이룬다. 북한 당국의 주민에 대한 행위통제 수단인 형법상 범죄규정의 급격한 양적 확대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 현상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해 북한주민의 사회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일탈행위, 즉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입법화하는 국가의 법적 규정(legal definition)을 ‘범죄규정화(crime-definition)’라고 지칭하고자 한다.²⁾ 범죄규정화를 실시하기 이전 북한당국은 법적 통제를 사상통제의 차선책으로 여겨왔고 준법교양사업을³⁾ 통해 주민들에게 법규범을 포함한 사회

1) 북한에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란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북한식 사회주의적 규범과 가치에서 벗어난 행위이다(황의정, 2016: 38).

2) 북한은 형법상 범죄행위와 유사한 위법행위를 행정처벌법 및 인민보안단속법에 규정함으로써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를 다양화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통제방식을 ‘과잉범죄화’ 및 ‘범죄규정화’ 개념에 포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주의규범의 자발적 준수를 요구해왔다. 준법교양 및 법적 통제의 사상적 수단으로 독특한 범무생활이론인 ‘사회주의범무생활론’을 구축하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강화하거나 변형하여 이를 법적 통제정책으로 활용해왔다. 북한사회에서 법을 비롯한 사회주의적 규범에 대한 자발적 준수를 촉구하는 범무생활론의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이에 북한은 ‘규범적 법문건’을 일반주민도 볼 수 있도록 대중용 법전을 발간하기에 이르렀고, “공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라고 발간취지(법률출판사 편, 2004)를 밝히면서 법전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였다. 이와 때를 맞춰 북한식 ‘법치주의’, 즉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을 내놓고 사회주의법치를 강조하며 활발한 법제구축사업을 진행해왔다. 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회주의법체계 완비를 목적으로 ‘법제정법(2012.12.19. 채택)’을 제정하기도 하였다(박정원, 2017a, 2017b). 2004년 형법의 전면개정이후 2015년까지(2016년 법전참고) 매해 개정되는 북한형법 규정 속에 새로운 범죄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활발하지 않았던 북한당국의 지속적인 범죄규정화 작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본격화되었는지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글은 북한에서 생산해낸 범죄관련 문헌을 분석하여 북한이 범죄관련 법제구축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해왔는지 파악하고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북한의 범죄관련 법제구축의 전개과정인 사회주의범무생활론의 변화 과정과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의 출현 과정 등을 분석한다.

3) ‘준법교양’이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과 규정들을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집행되도록 이끌어주는 사상교양”으로, 즉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교양을 말한다(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2009: 327).

II.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의 형성 및 변화 과정

사회주의 북한에서 준법이란 당의 영도에 따른 당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북한에서 법이란 정치의 표현형식이며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김일성, 1981: 220-221). 그런 법의 준수는 곧 당정책을 따르는 것 그 이상도 아니다. 현실 사회주의체제가 그러했듯, 북한 역시 법을 정치에 종속시키는 ‘법의 정치기능주의(political functionalism of law)’ 논리를 적용하여 사용하였다(Brunner, 1977: 145).

북한은 구성원을 법으로 통제하는 것보다 사상교양과 맥을 같이하는 준법(사상)교양을 통해 준법정신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주의 규범위반 현상을 예방하고자 하였다. 준법교양과 법적 통제 수단으로 국가적인 ‘법무생활’을⁴⁾ 북한식으로 표현한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을 내놓아 이를 활용하였다(박정원, 2011: 3). 이는 실제법상 법적 처벌근거에 따라 구성원들의 행위를 통제하기보다 사상교양방식을 통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예방적 통제방식을 취한 데 따른 결과였다. 이하에서는 북한당국이 범죄규정화를 실행하기 전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강화하고 변형하여 활용해왔는지 살펴본다.

4) ‘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국가적인 규범생활”을 뜻하며,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만 자각적·조직적·국가적 법무생활이 존재한다고 한다(사회과학출판사 편, 2007: 172).

1.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의 구축과 강화

1) 사회주의법무생활 지도체계의 구축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은⁵⁾ 김일성에 의해 수립되었다. 이는 1977년 2월 28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잘 지도할데 대하여”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일성, 1986b). 이런 사실을 2009년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라는 제하의 논문(김경현, 2009: 104)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논문은 2007년 2월 28일은 ‘사회주의법무생활 지도체계’가 구축된 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론 구축과 관련하여 1977년의 연설내용에서 김일성은 행정경제일꾼들과 도·시·군당책임비서들의 관료주의와 전횡 등 법위반행위의 원인이 인민정권기관의 법적 통제기능의 약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를 막기 위해 인민정권기관의 법적 통제기능을 강화하려면 ‘법무생활지도체계’를 새로 수립하고, 비상설기관인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성원의 법무생활을 지도·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지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검열위원회, 사회안전부, 검찰소 등을 동원하여 검열사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이 지도위원회의 주된 업무는 국가기관일꾼들의 국가재산 탐오낭비, 국가

5)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이나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론’ 등으로 명기한 이유는 북한이 구성원들에게 준법정신이나 준법의무를 준법사상교양으로 강요해온 방식이 담론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준법담론’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함이다.

법 위반, 일을 되는대로 하는 방식, 국가 법령 및 결정에 대한 잘못된 집행 등을 검열하여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법적 통제 강화 외에 지도위원회가 일꾼 및 근로자 대상으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자각적 법준수 교양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한다(김일성, 2005: 395-406). 이 시기 김일성이 내놓은 법무생활지도체계의 기본 목적은 국가기관일꾼들의 관료주의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설치하였다.⁶⁾ 이는 같은 해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제6기 제1차 회의)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제하의 김일성 연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해 2월 연설과 마찬가지로, 김일성은 국가경제기관 지도일꾼들의 관료주의 해소 방안으로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 제고를 강조한다. 12월의 연설은 이 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지도위원회의 중요 임무로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꾼들이 권력을 람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⁷⁾ 이를 실현하려면 이 지도위원회가 국가기관일꾼들에게 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을 해설해주고 준법의식을 제고시켜줌으로써 자각적인 법준수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법교양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일성, 1986b: 541-542).

6)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설치여부에 대해서는 1977년 4월 6일의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1977.4.6.)”(김일성, 1986a: 156)라는 제하의 연설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혁명적 준법기풍’은 “사람들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각적인 준법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심형일, 1987: 358).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운다는 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한다(김정일, 2011: 138).

2)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

김정일은 선대에 구축된 사회주의법무생활 지도체계를 기초로 1982년 12월 15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이 논문에 따르면, 사회주의법무생활이란 “모든 사회성원들이 사회주의국가가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을 말한다. 북한잡지 『천리마』 용어해설(문예출판사 편, 1990: 27)에 따르면,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법질서를 준수하는 “인민근로대중의 자각적인 규율생활”이며 사회주의법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이고 공동행동을 실현해나가는 국가적인 조직생활”의 특징을 갖는다. 김정일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해야 할 당위성 내지 이유를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우리의 혁명투쟁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김정일, 2011: 134).”라고 하여 전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연결하여 주장한다.

김정일은 위 논문 발표에 앞서 1982년 3월 31일 김일성이 창시한 주체사상을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 주체사상을 적용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시기 사상분야나 법관련 분야의 체계화사업은 김정일의 권력승계체제를 확립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었다(김동한, 1990: 141). 법적 통제 수단인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권력승계체제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김정일 주도 하에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그에 따라 사회 각 분야를 주체사상화하는 작업을 펼쳤던 것이다. 그 가운데 후계자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심이나 불만을 잠재우고자 통제수단인 ‘사회주의법무

생활강화론'과 같은 높은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준법교양사업을 펼쳤던 것이다. 이는 후계체제 공고화 작업의 일환이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김정일의 논문을 두고 “불후의 고전적문헌”으로 치켜세우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하였다(홍극표, 1983: 48). 북한 법이론서에는 “주체의 법 사상과 이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가일층 발전풍부화시킨 역사적문헌이며 자주시대의 요구에 맞게 법을 건설하고 법무생활을 강화해나갈수 있게 하는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후계자의 치적임을 강조하였다(심형일, 1987: 39).

한편 김정일은 위 논문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대책으로 사회 전체에 혁명적 준법기풍의 철저한 수립과 당조직 및 인민정권기관의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 강화를 제시한다. 전자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자각적인 법무생활을 실천하도록 준법교양을 강화하고 준법의식을 고양시킬 것을 강조한다. 준법교양을 위해 법규범원문침투사업과 법해설선전사업까지 병행하라고 지시한다. 이를 위해 군중 속에서 ‘법무해설원’ 역할을 제고할 것도 지시한다. 또 준법기풍 수립을 위해 사상교양, 사상투쟁 강화와 함께 법집행의 검열감독사업 등 법적 통제 강화를 강조한다. 후자를 실현하기 위해 법무생활의 기초인 법규범 등 ‘법제정사업’과 ‘법해석 적용사업’을 올바로 진행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기능과 역할 제고를 강조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지도위원회 정체성을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집체적지도기관”이라고 명확히 밝힌 점이다(김정일, 2011: 138-151).

이후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론은 주체사상을 사상적·이론적 토대로 한 북한의 독특한 법이론인 ‘주체의 법이론’의 범주로 편입되어

체계적 구성과 상세한 내용을 갖추었다. 주체의 법이론을 설명하고 있는 북한 법이론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본질과 필연성, 강화의 기본요구, 강화 방도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법이론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인생활을 비롯한 정치·경제·문화생활 등 사회전반의 생활분야를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이며, 권력적 성격을 띤 규범생활이라고 설명한다(심형일, 1987: 338-396). 이 부분에서 북한당국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 목적이 드러난다. 이런 내용은 1982년 김정일 논문의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북한은 구성원에게 요구해왔던 준법성을⁸⁾ 새로운 의미를 가진 ‘사회주의준법성’으로 대체하여 강조하였다. 위 법이론서는 사회주의국가라고 하여 저절로 법이 준수집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국민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무조건 정확히 준수집행할데 대한 국가적인 요구”인 사회주의준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심형일, 1987: 302). 결국 북한의 사회주의준법성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법적 강제 하에 준법의무를 부여하는 북한식 표현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준법성과 관련하여 준법의무자에 대한 헌법적 규정은 여러 번의 헌법 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해왔다.

<표> 북한헌법상 준법의무규정의 변화

제·개정 연도	북한헌법상 준법의무규정
1948년(제정) 인민민주주의헌법	제27조 제1항 국민은 헌법 및 법령을 <u>준수하여</u> 야 한다.

8) 북한이 말하는 ‘준법성’이란,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정확히 지키는 성질”을 의미한다(사회과학출판사 편, 1992: 309). 결국 준법성은 준법정신의 다른 말이다.

1972년(제정) 사회주의헌법	<p>제1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에 의하여 <u>자각적으로 준수된다.</u></p> <p>제67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 사회주의적 행동준칙을 <u>철저히 지켜야 한다.</u></p>
1992년(개정) 사회주의헌법	<p>제1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은 근로인민의 의사와 이익의 반영이며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이다. 법에 대한 존중과 엄격한 준수집행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있어서 <u>의무적이다.</u> 국가는 <u>사회주의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u></p> <p>제81조 공민은 국가의 법과 사회주의적 생활규범을 지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된 영예와 존엄을 고수하여야 한다.</p>
이후 개정헌법	1992년과 내용 동일

출처: (장명봉 편, 2015) 참조 작성

1948년 인민민주주의헌법은 공민에게만 준법의무를 부여하였고,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와서는 “모든 국가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의 자각적인 준수를 선언하면서 여전히 공민에게만 준법의무를 부여하였다. 이후 1992년 개정 사회주의헌법 제18조에서 준법의무자로 공민은 물론이고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게까지 확대하여 명문화하였다. 더 나아가 이 법 제18조는 그간 심화·발전시켜온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와 ‘사회주의법률제도의 완비’ 등 국가적 필요를 헌법에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북한은 이러한 정책을 2016년 개정 헌법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법률출판사 편, 2016).

2. 1990년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의 한계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론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김일성 교시와 당정책을 투명한 법적 규정사항을 엄격히 지키며 통일적으로 공동행동을 실천하는 법적 강제를 더한 준법생활과 다름없다. 이는 결국 수령에 대한 충실성 요구를 법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사회주의체제 수립과정에서부터, 완성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구성원에게 준법교양을 통해 자각적인 준법의무생활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해왔다. 또한 해당 일꾼들에게 관료주의를 포함한 위법현상을 척결하고자 사상교양과 사상통제는 물론이고 법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물론 구성원의 일탈과 범죄에 대해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통제보다는 준법교양 등 사상적 학습을 우선시해왔다.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와 사회주의준법성 고취 등을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이러한 노력은 1990년대 식량난 등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 절대자로 여겼던 수령의 죽음과 국가의 배급 중단 이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또한 밖으로부터 부르조아사상, 수정주의사상이 들어오는것도 막을수 있습니다(김정일, 2011: 136).”라는 김정일의 당위명령은 북한주민들을 제대로 사상교양하거나 설득하지 못하였다. 또한 수령의 교시와 당정책이 반영된 사회주의준법성을 북한주민들에게 강요하기에 사상통제적 한계가 있었다. 주민들은 물론이고 당일꾼들도 비사회주의적 방법으로 식량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령적인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 준법교양 등의 사상통제가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김정일이 지적해오던 비사회주의적 현상의 위험성을 확인하여 그 발

생의 맹아적 단계에서부터 제거하라는 명령지시를 관련 일꾼들은 심각한 사회적 이완상태에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2000년대 들어 각종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포함한 위법현상은 북한사회 전반에 퍼져나가고 말았다. 김일성과 김정일이 강조해온 사회주의국가에서 구성원들의 자각적인 준법생활인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은 완전히 실패한 준법담론이자 준법정책이었다.

3. 2000년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의 변형

북한은 1980년대 김정일의 권력승계체제 확립과정 중 법 영역에서 ‘주체의 법이론’을 창출하는 등 전 사회 영역에 주체사상을 적용한 것과 같이 2000년대 초 역시 사회 모든 영역에 선군사상을 적용시키기 시작했다(박국성, 2003). 법무생활 영역도 예외일 수 없었다. ‘고난의 행군’기간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론’이 재등장하였다. 이는 2000년대 초에 나온 북한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2003년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실현의 위력한 법적담보”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의미와 지위 및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사회주의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좌우하는 관건적고리의 하나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문제는 오늘 선군시대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절실하게 나서고 있다. ……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당의 선군정치실현의 위력한 법적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당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받들어 나가는데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차지한

지위와 역할과 관련된다. …… 사회주의법무생활이 모든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주의국가가 당과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구현하여 제정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규범생활인것만큼 그것은 곧 당의 사상과령도를 받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이러한 본질로부터 우리 당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하자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한석봉, 2003: 국내 보존된 워드파일 형태로 페이지 미상).

과거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수령의 교시와 당의 영도에 따른 정책을 반영한 법을 지키며 생활하는 규율·조직생활이었다면,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은 당과 수령의 사상인 선군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적 실천이다. 하지만 위 글에서 확인되는바, 단순히 준법의무 강화가 아니라 표현 그대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 강화가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이다. 더 나아가 이 문헌은 사회구성원에게 인민군대와 같은 품모와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인민군대와 같은 높은 수준의 사상정신적품모와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데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 우리의 법규범과 규정들에는 당의 독창적인 선군혁명사상과 투철한 반제혁명정신 그리고 인민에 대한 당과 수령의 육친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으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혁명적이며 사회적인 생활원칙과 방도들이 전면적으로 규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 조직성과 규률성이 강한 선군

시대사회적인간의 풍모를 갖추게 된다(한석봉, 2003).

위 글에서 알 수 있듯,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군대와 같은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수령이 제시한 선군사상과 당정책을 반영한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면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구성원에게 일상생활마저도 군대와 같은 규율적인 조직생활과 온 사회의 선군정치화를 위해 ‘군 우선’의 준법생활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총체적 국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나온 정치방식과 지배담론인 선군정치-선군사상은 이제 노동계급이 중심이던 고전 사회주의 정신과는 요원한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북한은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성대국건설과 연결시켜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05년 12월 15일 노동신문의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과 강성대국건설”이라는 제하의 논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군님께서서는 오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중요한 고리로 틀어쥐시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의 법무생활을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로 더욱 공고발전시키시었다. 선군시대의 법무생활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다. …… 우리 시대 법무생활에서는 그 본보기도 인민군대이고 그 절대적 기준도 인민군대의 기질과 풍모이다(장재수, 2005: 2).

위 논설은 서두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라는 김정일의 논문(1982)을 사회주의법무생활 사상과 이론을 체계

화하고 집대성한 고전적 문헌이라고 평가한 뒤, 선군시대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법무생활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선군시대에는 모든 구성원이 인민군대식 준법기풍을 모범삼아 법무생활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준법의무를 군대식으로 강요하는 것과 같다.

선군시대의 법무생활은 사람들을 주체의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는데서도 적극적인 작용을 한다. ……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은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위력한 담보로 된다(장재수, 2005: 2).

계속해서 위 논설은 선군시대의 법무생활이 사람들의 범위반행위를 일으키는 동인인 낡은 사상잔재를 제거하는 작용과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강력한 담보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논리로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한다. 법무생활의 실천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2009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라는 논문(김경현, 2009)에서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논문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이유는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철저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사회주의제도 고수를 위해 선군시대에 맞게 법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시키고 이전보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쬐먹는 요소

인 비사회주의적 현상이자 위법현상을 적발하여 살살이 없앨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경현, 2009:104).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의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여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자위적군사력을 철통같이 다지는것과 함께 제국주의반동들의 내부와해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며 퇴폐적이고 이색적인 요소들과 부르쵸아생활양식, 종교와 미신행위, 부정부패행위, 도박과 불량행위, 부당한 리혼현상과 같은 위법현상들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맹아단계에서 철저히 쓸어버려야 한다(김경현, 2009: 105).

위 글에서 주목할 점은 예로 들고 있는 위법현상이 2004년 개정형법에 새로 규정된 범죄유형과 형벌이 강화된 기존 범죄유형과 일치한다는 점이다. 미신행위죄, 관료의 증명서매매죄, 뇌물수수죄, 비법혼인죄는 새로운 범죄유형들이다. 불량행위죄와 도박죄는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형벌이 강화된 기존 범죄유형들이다.

둘째,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이유는 모든 국가사회생활 분야에서 (군대 같은)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함이다. 선군시대의 제도 및 질서 수립을 위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방도로 선군시대에 맞는 사회주의법을 끊임없이 제·개정하는 법체계화 사업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 목적이 드러난다. 이는 결국 구성원을 통제하고자 강제력이 강한 법제·개정사업을 촉구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범죄규정화 추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선군시대 사회질서 확립의 장애요소인 위법현상과 범죄, 무규율과 무질서를 극복할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혁명적 준법기풍의 수립과 사회주의법

무생활 강화를 역설하고 있다(김경현, 2009: 106-108).

셋째,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이유는 당면한 과제인 경제강국건설 실현하기 위함이다. 북한은 ‘강성대국건설’목표 중 경제강국을 제외한 정치·사상·군사강국을 실현하였다고 자부해왔다. 남은 과업인 경제강국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노선과 경제정책을 반영한 경제관리관련 법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관리와 경제건설에서 나타나는 위법현상과 자본주의적 요소를 척결하는 법투쟁을⁹⁾ 벌려나가도록 요구하고 있다(김경현, 2009: 106-107).

결국 북한당국이 과거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을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론’으로 변형하여 주장한 궁극적 이유는 북한체제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과거 사회주의법무생활론과 비교할 때, 경제부문에서 위법현상 및 자본주의적 요소 척결을 위한 법적 투쟁과 선군시대에 맞는 법제·개정사업 진행을 더 절박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법에 근거한 법적 통제를 더욱 활용하고자 하는 북한당국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성원의 행위통제를 법적 처벌 등 강화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론’으로 나타난 것이다.

결론적으로, 북한당국은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론’을 내세워 자본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형벌과 행정처벌을 가하는 통제대상으로 삼았다. 결국 비사회주의적 행위 처벌을 위한 범죄규정 확대를 비

9) 북한에서 ‘법투쟁’이란, “법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위법행위와의 투쟁”을 말하며, “범위반자를 법으로 다스리고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것”을 내용으로 한다(사회과학출판사 편, 2007: 173).

롯한 여러 법제·개정사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사상’이라는 새로운 법치건설사상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Ⅲ.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 출현과 과잉 범죄규정화

1. 법관련 출판보도물 창간과 법문건의 대중화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와 법적 통제 공간을 확장하는 두 가지 이례적인 사업을 시행하였다. 첫 번째는 ‘정치법률저널의 창간’이며, 두 번째는 ‘대중용 법전의 발간’이다.

2003년부터 북한당국은 정치법률관련 논문을 실은 「정치법률연구」를 계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저널은 창간사에서 김정일의 “정치법률사상의 정당성과 과학성을 깊이 있게 해석론증함에 대한 절박한 시대적 요구”와 함께 김정일의 국방위원장추대 1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하게 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이 저널은 “정치학, 법률학부문에서 사업하는 교원, 연구사들, 현직일군들”이 그 주요 독자라고 설명하고 있다(김동한, 2009: 55-56, 재인용). 그런데 북한당국은 법학저널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계간지를 발행해오고 있었다.¹⁰⁾ 이 법학저널은 주로 북한의 사회주의법이론, 사회주의법무생활론과 헌법을 비롯한 부문법 등을 다루고 있다. 반면 「정치법률연구」는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

10) 2011년부터 이를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로 잡지명을 변경하였다.

학(또는 법률)」과 중첩된 분야도 다루면서 법적 통제를 더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화론은 물론이고 법제정사업을 비롯해 일반범죄의 해독성과 행정처벌의 국가관리상 필요성, 비사회주의적 현상과 투쟁 강조 등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2003년 「정치법률연구」를 창간한 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김정일정권의 새로운 정치방식과 지배담론 및 법적 통제방식의 변화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특정 출판보도물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2003년 제1호 「정치법률연구」의 경우 주로 ‘선군정치-선군사상’과 ‘강성대국건설’ 관련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이후 발간된 「정치법률연구」는 형사정책관련 논문이 주를 이룬다. 다른 하나는 독자대상에서 추론할 수 있는바, 국가에 복무하는 법률전문가와 통제기관일꾼들을 국가의 새로운 정치법률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설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북한당국이 출판물을 ‘통제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실은 2006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의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실현하기 위한 …… 선군정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형사소송법 하나만은 아니다. 형법, 검찰감시법 등 여러 부문법들과 함께 당의 정강이나 권력기관들과 출판보도물 등도 있다. ……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자면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의 통제적역할을 높여야 한다(리창세, 2006: 60-62).

북한은 정치법률저널을 창간한 다음해인 2004년 대중용 법전을

최초로 발간하였다. 2000년대 들어와 북한 역사상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법제·개정사업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 법전의 연속적 발간이다. 2004년 8월 25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을 발간한 후, 2006년 3월 15일에는 초판 증보판을, 2012년 7월 30일에는 법전 제2판을, 2016년 6월 15일에는 제2판 증보판을 발간하였다. 초판 법전은 기존 법률에 2004년 6월까지 제·개정된 법률을 더한 총 112개의 법률을, 증보판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새로 제정한 15개의 법률과 개정된 32개의 법률을, 제2판은 기존 법률에 2006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제·개정된 법률을 포함한 총 187개의 법률을 수록하고 있다. 최근 발간한 제2판 증보판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2월 동안 새로 제정한 31개 법률과 개정된 81개 법률을 수록하고 있다(박정원, 2017b).

2004년 이전까지 북한당국은 누구나 열람 또는 소지가 가능한 남한의 대법전이나 소법전 형태와 달리 개별 법률에 대한 독자적인 법전 형태로 배포용도에 따라 법전을 발간하였고 대중용으로 발간한 적은 없었다. 대중용 법전 발간 전에는 배포대상에 따라 법전의 구성 및 내용을 다르게 하여 발간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입수된 다른 출판물 중 ‘간부용’이라고 별도 표시된 점에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장명봉, 2010: 55). 따라서 북한 대중용 법전의 발간은 ‘규범적 법문건’을 일반주민에 공개했다는 데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2004년에 발간한 대중용 법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대중용 법전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기간을 거쳐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한 사회변화를 겪은 북한의 실정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용 법전이 수록하고 있는 개정 형법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북한이 대중용 법전을 발간한 목적을 2004년 초판의 발간 취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법 개념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은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튼튼히 다지고 빛내이며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을 앞당겨 실현하자면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본 출판사는 국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대중용)을 편찬하여 발행한다(법률출판사 편, 2004).

법전 발간취지를 보면, 이제부터 북한주민 스스로 자신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법전을 통해 미리 알고,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알아서 조심하며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2012년 제2판 발간취지에서는 국가 법규범에 대한 자각적인 준수의무야말로 신성한 의무라고까지 주장함으로써 국민의 준법의무를 더욱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이 법제·개정사업을 활발히 단행한 데에는 구성원의 일탈과 범죄에 대한 법적 통제 근거 마련 등 국가적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이 더 컸다.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의 방도로 제시하였던 준법교양이나 사상투쟁, 군중 속에서 법해설 선전사업만으로 주민들의 준법의식 고취 및 범죄예방 등 효과를 낼 수가 없었다. 결국 북한당국은 구성원의 행위기준이자 법위반행위에 대한 통제기준인 법규범에 대한 준수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법적 제재를 명시한, 법적 통제를 강화한 법규범을 공개하기에 이

른 것이다. 북한당국은 대중용 법전을 주민의 법인식이나 준법의 식 고양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하는 한편, 형사법¹¹⁾ 공개함으로써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범죄로 처벌하는 데 주민들의 반발을 막는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식 발간된 대중용 법전은 외부 독자나 북한주민이 북한의 모든 법률을 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북한 내에서 제·개정하는 모든 법률을 대중용 법전에 전부 수록·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 시기별 대중용 법전에 형사법을 제외하고 치안·행정처벌과 관련한 인민보안단속법 및 행정처벌법과, 구성원의 법준수 및 법집행 감시와 관련한 검찰감시법 등은 수록·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2007년에 제정한 형법부칙도 대중용 법전에 공개·수록되지 않았다. 여전히 체제보안과 사회내부 통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에 대해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의 출현

살펴본바, 북한은 2004년과 2005년 사이 주민들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비롯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법적 근거 하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범죄규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규정 확대작업’이었다. 대대적인 범죄규정화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필연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 대한 주체의 이론”(진유현, 2005) 논문

11) 북한은 주민의 생명 및 자유 등의 권리 제한이나 침해, 즉 인권침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형사법(형법 또는 형사소송법) 등의 내용에 대해 ‘비밀주의’를 취해 왔다(박정원, 2010: 227).

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에 등장하였다. 이 논문은 범죄규정화의 당위성을 뒷받침해주는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을 소개하고 있다. 이 논문 서두에서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국가를 법치국가로 건설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이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법치건설사상을 역사상 처음 제시한 사람이 김정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논문은 기본내용으로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필연성, 본질과 특징, 방도(방안)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은 사회주의국가는 왜 법치국가로 되어야 하며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어떤 국가이고 어떻게 건설하여야 하는가 하는 법치국가건설의 기본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의 기본내용은 첫째로,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의 필연성에 관한 사상이며 둘째로, 사회주의 법치국가건설의 본질과 특징에 관한 사상이며 셋째로,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방도에 관한 사상이다(진유현, 2005: 46).

위 글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 필연성 부분에서, “사회주의국가가 법치국가로 되어야 하는 것은 사회주의법이 국가관리와 사회관리의 기본수단이라는 사정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사회주의법치국가’가 되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현하여 인민의 복무자로서 자기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 결국에는 강성대국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제도와 질서를 확립한 사회주의법치국가라야 강성대국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 글은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 및 특성 부분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법치국가를 설명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법치국가’란 “당의

령도하에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가 행위규범으로 표현된 사회주의 법을 기본수단으로 하여 사회관리, 국가관리를 해나가는 국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당의 영도 부분이다. 법치에 대한 당의 영도가 중요한데, 당의 영도에 따라야만 법의 제정과 집행, 집행감독이 당정책의 요구 및 법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한다(진유현, 2005: 47-48).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방도 부분에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정사업 강화를 통한 사회주의법체계 완비, 준법교양의 강화와 준법의식의 고취를 통한 혁명적 준법기풍 수립,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법적 통제 강화를 통한 철저한 법질서 수립 등을 들고 있다(진유현, 2005: 48-49).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주의법치국가’란, “당이 령도하는 법치국가”로, “당의 령도밑에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당과 수령의 선군사상과 선군령도를 실현해나가는 국가”를 말한다. 북한은 당의 영도가 선군시대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근본 핵이자 생명이라고 강조한다(강철남, 2007: 21). 현 선군시대는 당정책을 관철시키는 데 강력한 담보이자 수단인 사회주의법을 더욱 강화시킬 것을 절박하게 요구한다고 설명한다(강천복, 2005: 32).

결국 북한이 말하는 ‘선군시대 사회주의법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하에 선군사상과 당의 정책이 반영된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북한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이제 법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된 것이다. 사회구성원에게 과거 김일성의 주체사상은 절대적 세계관이요 가치관이요 신앙이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달리 1990년대 식량난이후 시장의 경험은 북한당국이 부정한다 해도 구성원의 사고방식이 경제개념 등을 포함한 사적 소유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가치관에 가까워졌고 수령의 사상만 가지고 구성원을 통제할 수 없었다. 물론 북한당국이 정치이데올로기로서 내놓은 선

군사상도 구성원의 내면까지 통제할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필요성을 제기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 방안으로 세 가지 강화정책을 제시한 것이다. 즉 법제정비사업, 준법교양, 법적 통제 등을 강화할 때에야 비로소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시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관련 북한문헌이 다수 쏟아져 나왔고, 활발한 법제·개정사업이 이루어졌다. 북한은 선군시대의 사회주의법무생활강화론 주장을 펴면서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근거 마련을 위해 법제·개정작업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하였던 것이다.

3. 법제·개정을 통한 범죄규정화의 추진 현황

대중용 법전에 수록된 법률 수에서 추론할 수 있듯, 북한당국은 강성대국으로 나아가는 방안으로 제시한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주의법제를 활발히 구축 및 정비해왔다. 1992년 개정헌법에 ‘사회주의법률제도의 완비(제18조)’를 명문화한 이래 10여년이 지나 급격한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다수의 법률제·개정을 진행하였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다양해진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2004년과 2005년 사이 범죄 및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관련 법제·개정작업을 대대적으로 단행하였다. 대중용 법전에 수록된 형법 및 미수록된 형법부칙을 범죄규정화 대상으로 삼는 한편, 행정처벌법 및 인민보안단속법의 제·개정을 통해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방식을 다양화하였다.

범죄 및 위법행위 관련법의 제·개정 빈도를 살펴보면, 북한은 형법의 경우 1987년 제정이후 1990년대 3차례, 2000년대 16차

례(2007년 형법부칙 제정 미포함)로, 2015년까지 총 22차례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2004년 전면개정 이후 2015년까지 매해 1-2회 이상 형법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한편 입수된 북한법률문건 자료에 따르면, 치안과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인민보안단속법의 경우 1992년 ‘사회안전단속법’으로 제정 이후 1990년대 1차례, 2000년대 3차례로(2001년 인민보안단속법으로 개칭) 2005년까지 총 4차례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으로, 위법행위를 규율하는 행정처벌법의 경우 2004년 제정 이후 2015년까지 총 9차례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법률출판사 편, 2016; 장명봉 편, 2015; 국가정보원 편, 2017).

북한당국은 2000년대 들어 대중용 법전 발간을 계기로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범죄규정화작업을 더 강도 있게 진행해왔다. 대중용 법전에 수록된 형법상의 범죄규정화 외에 미수록된 치안·행정처벌법상의 위법행위 규정과 형법부칙상의 범죄규정을 통해서도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해 행정적 제재 및 중형 등을 가함으로써 법적 통제를 강화해왔다. 범죄규정수 및 위법행위규정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북한당국은 2004년 4월 개정 형법상 일반범죄규정을 1987년 형법상 106개에서 231개로 확대·규정하였다. 형법개정 이후, 같은 해 7월 제정한 행정처벌법에 146개의 위법행위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1992년 제정한 사회안전단속법을 2001년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법명을 바꾼 후 2005년 7월 단속대상행위규정 20개에서 32개로 확대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형법부칙을 제정하여 23개 일반범죄 가중처벌규정을 두었다가 2010년 10월 이를 개정해 11개 규정으로 축소하였다. 2011년 10월에는 행정처벌법을 개정하여 위법행위규정을 기존 146개에서 195개로 확대·규정하였고, 2015년 12월에 재개정된 행정처벌법의 위법행

위규정 수 변화는 없었다(장명봉 편, 2015; 국가정보원 편, 2017). 북한의 과잉 범죄규정화 현상은 김정일 정권 하에서 나타난바, 특히 2007년 시장단속 강화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정된 형법 부칙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가 2010년 개정된 형법부칙에서는 수그러들었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온 이래 북한형법은 2012년 2차례, 이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각 1차례씩 총 5차례 개정되었고, 2012년 개정형법은 일반범죄규정이 기존 231개에서 217개로 도리어 축소·규정되었다. 그런데 2015년 개정형법에서 일반범죄규정은 기존 217개에서 227개로 확대되었다. 주목할 점은 2015년 형법전에 별도의 장인 “제10장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범죄”를 신설하여 새로운 범죄분야에 대한 범죄규정 10개 조항을 둔 점이다. 북한은 2006년 ‘자금세척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불법거래로 획득한 자금이나 재산을 금융기관 등을 통해 합법적 거래로 획득한 자금이나 재산으로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통제해왔다. 2014년 개정된 ‘자금세척방지법’에 규율대상인 자금세척행위 외에 테러자금지원행위가 추가 규정되었다. 이듬해 형법개정을 통해 자금세척방지법상 규율과 병행되도록 형법에 별도의 장을 두어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범죄”를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2009년 화폐개혁 조치로 인한 북한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사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돈주를 비롯한 다양한 사금융 주체들이 등장한 것과 불법적 금융거래가 빈번해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불법적 사금융시장 활성화로 국가재정의 파탄, 공적 금융의 기능 상실, 사경제 활동의 심화로 인한 부의 편중 악화 등(임을출, 2015)을 염려하여 강력한 형벌규정을 신설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테러자금지원과 관련한 범죄규정의 형성

배경에 대해서는 관련 현상들과 연계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5년 개정형법에 신설된 범죄규정 중 “비법적인 자금거래 및 소유, 리용죄(제291조)”나 “비법적인 돈자리개설 및 계약체결죄(제292조)”가 대표적인 사금융거래를 통제하고자 규정된 범죄규정이다. 여기서 돈자리는 은행계좌를 말한다. 한편 제10장의 범죄규정은 아니지만, 기존 범죄규정이 폐지된 동일 조항에 새로운 범죄유형으로 “비법적인 국제통신죄(제222조)”와 “정치협잡죄(제231조)”가 규정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법률출판사 편, 2016). 일반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범죄규정 등장은 법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사회문제가 법 조항으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살펴본바, 북한은 사회 내 만연하는 구성원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실정법에 근거하여 법적 처벌로 통제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5년 사이 범죄규정화작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해왔다. 체제내부 단속, 즉 주민들의 각종 위법행위 및 범죄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자 여러 가지 형사·행정처벌정책, 즉 범죄규정화정책을 실행해온 것이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법적 근거와 무관하게 물리적 강압으로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통제해오던 방식을 점차적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법적 처벌로써 통제하는 방식의 변화를 보여주었다.

IV. 결론: 김정은 시대 범죄규정화 전망

2000년대 초반 북한당국은 두 가지 차원에서 범죄관련 법제구축 내지 범죄규정화를 전개하였다. 첫 번째는 법사상과 법이론적 차원에서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

상 및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 등 북한식 사회주의 법이론과 법사상 및 법적 정당성 논리를 가지고 범죄규정화를 전개하였다. 두 번째는 실질적 방식의 차원에서 법관련 출판보도물을 창간하여 사회구성원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사회주의법제정비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규범적 통제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토대로 비사회주의적 행위를 형법상 범죄와 행정처벌법상 위법행위로 규정하는, 국가적 범죄·위법행위규정화작업을 추진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법적 행위통제기제인 형법과 행정처벌법만 범죄·위법행위규정화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거리에서 범죄 및 위법행위를 감시하고 포착하는 인민보안원의 임무 및 위법행위를 규율하는 인민보안단속법에 대해서도 통제기제 대상으로 삼았다. 더 나아가 2007년 시장통제를 강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등 가중처벌을 가하는 특별법인 형법부칙을 범죄규정화 대상으로 삼아 제정하였다. 북한당국은 이런 범죄·위법행위규정화작업을 일회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2004년부터 2015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왔다.

이상 북한의 범죄관련 법제구축 과정을 살펴본 결과, 향후 김정은 시대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전망할 수 있다. 첫째, 북한당국은 선대의 법적 통제 강화정책을 계승하여 ‘사회주의법치’를 내세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법적 처벌을 행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당국은 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할 법한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금융거래 및 김정은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부의 축적을 통한 실력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등의 관련 법제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셋째, 북한당국은 향후 시간은 걸리겠지만 북한주민들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사상교양보다는 범위만에 따른 벌금형이나 신체형과 같은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에 의한 통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 접수: 4월 17일 ■ 심사: 4월 23일 ■ 채택: 5월 14일

참 고 문 헌

- 강천복. 2005. “사회주의법은 선군정치에 한 표현형식이며 위력한 실현수단.” 『정치법률연구』 제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0-32.
- 강철남. 2007.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 『사회과학원 학보』 제1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22.
- 국가정보원 편. 2017. 『북한법령집 (상)』. 서울: 국가정보원.
- 김경현. 2009.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5권 제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04-108.
- 김동한. 1990. “북한의 법사상 - 주체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고향논집』 제7집. 경희대학교 대학원 원우회. 137-159.
- 김일성. 1981.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1958.4.29.).” 『김일성저작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8-227.
- _____. 1986a.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1977.4.6.).” 『김일성저작집』 제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47-174.
- _____. 1986b.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1977.12.15.).” 『김일성저작집』 제3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25-544.
- _____. 2005.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잘 지도할데 대하여(1977.2.28.).” 『김일성전집』 제61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95-406.
- 김정일. 2011.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1982.12.15.).” 『김정일선집』 제10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32-151.
- 리창세. 2006. “공화국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52권 제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60-63.
- 문예출판사 편, 1990. “법무생활, 사회주의법무생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임무.” 『천리마』 제9호. 평양: 문예출판사.
- 박정원. 2010.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22권 제1호. 평화문제연구소. 225-259.

- _____. 2011. “북한의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론’과 법제 정비 동향.” 『동북아 법연구』 제5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1-29.
- _____. 2017a. “북한의 법제정(입법) 체계의 분석 및 전망-‘법제정법’을 중심으로.” 『법제연구』 제53호. 한국법제연구원.
- _____. 2017b. “‘2016년 북한 법전(증보판)’의 내용과 특징 분석.” 『북한법 연구』 제17호. 북한법연구회.
- 법률출판사 편. 20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 _____.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증보판)』. 평양: 법률출판사.
- 사회과학출판사 편. 1992.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_____. 2007. 『조선말대사전 2』(증보판).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심형일. 1987.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 임을출. 2015. “북한 사금용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1호. 205-242.
- 장명봉 편. 2015. 『2015 최신 북한법령집』. 서울: 북한법연구회.
- _____. 2010.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북한에도 법이 있는가?”에 대한 성찰 -.” 『통일과 법률』 창간호. 법무부 통일법무과.
- 장재수. 2005.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과 강성대국건설.” 『로동신문』 (12월 15일), 2.
- 진유현. 2005.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 대한 주체의 리론.”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력사 법학』 제51권 제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45-49.
- 조선백과사전편찬위원회 편. 2009. 『광명백과사전 3 정치, 법』.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 한석봉. 2003.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선군정치실현의 위력한 법적 담보.” 『정치법률연구』 제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홍극표. 1983.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혁명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 『사회과학』 제6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8-53.
- 황의정. 2016. “북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범죄규정화 (crime-definition)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runner, G. 1977. The Functions of Communist Constitutions: An Analysis of Recent Constitutional Developments, Review of Socialist Law. Vol. 3, Issue 2. 121-153.

ABSTRACT

The Analysis and prospect of transition
process of legal system related to crime in
North Korea

Hwang, Eui Jeong

(Visiting Researcher Fellow, Institute for Study of Unification
in Ewha Womans Universit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North Korea has pursued the construction of the criminal law system by analyzing the North Korean literature related to the crime, and to prospect the direction of legal control over North Korean people in the Kim Jong-un era.

In the early 2000s, North Korea deployed criminal law systems on two levels. First, the legal system has been pursued with the logic of legalism and legitimacy of the North Korean socialism such as the theory of socialist justicial life in the Songun era, and the construction ideology of the socialist rule of law. Second, North Korea has claimed the legitimacy of the legal system and secured the legitimacy of exercising normative control through new law-related publication.

The future directions of legal control in the Kim Jong-un era is as follows. First, the Kim regime will continue to enforce the legal control policy and to exert legal punishment by defining as a crime under the penal code for non-socialist behavior that become a social problem, propounding the "socialist rule of law". Second, it will continue to build laws for the prevention of illegal

financial transactions and Wealth accumulation to threaten the regime. Third, it seems to accelerate the rule by law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legal sanctions for violating the law for controlling the North Koreans.

Key words: crime of North Korea, legal control, legal system construction, socialist judicial life, socialist rule of law